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- 116호

#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

『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』 제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## - 유의사항 -

1. 내역사업별 신청·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내역사업	세부과제	구분	공고	신청·접수	선정평가	협약		
		1차	2월	3월 4일 ~ 3월 18일	3~4월	5~6월		
수출지향형	-	2차	4월	5월	6~7월	8월		
		3차	7월	8월	8~9월	10월		
	민간투자	수시	별도 공고 예정					
시장확대형	후불형/	2차	4월	5월	6~7월	8월		
	전략형	3차	7월	8월	9월	10월		
		1차	2월	3월 4일 ~ 3월 18일	3~4월	5~6월		
시장대응형	-	2차	4월	5월	6~7월	8월		
		3차	7월	8월	8~9월	10월		

- ※ 1차 궁고 대상은 수출지향형, 시장대응형 과제이며, 시장확대형(민간투자연계) 과제는 별도 궁고를 통해 상반기 접수 예정
- ※ 하반기(2~3차) 지원과제 및 모집차수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세부 내용은 하반기 공고 참조
- 2. 신청자격 서류, 가점 중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(수정)제출이 불가하오니,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(18시) 내 신청·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사업 소개

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**기업주도형**사업으로,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**Scale-Up** 할 수 있도록 **혁신역량 단계별 R&D를 지원**하는 사업입니다.

※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[붙임2]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

# 2.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

※ 아래의 주요변경 사항은 금번 1차 공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추후 2,3차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구 분	시행 계획 변경 사항								
1 4	'23년도			'24년도					
	■ 회계구분에 따라 6개의 내역사업 운영			■ 회계 구분 없이 일반회계로 통합지원			로 통합지원		
	혁신 역량 회계	내역사업	내내역		력신 벽량	회계	내	역사업	내내역
	성숙 일반	수출지향형	수출강소 수출성장	 	성숙	일반	수출	진향형	수출
사업구조	소특	강소기업100	-						소부장특화
개편	모약 일반 모약	시장확대형	민간투자연계 후불형					민간투자연계	
	소특	소부장전략	전략형 -	-	로약	일반	시승	시장확대형	후불형  전략형
	초기 <u>일반</u> 소투	시장대응형 소부장전략	-		<b>논기</b>	일반	시장	상대응형	-
	구분	분(	야 및 품목		'	구분		분이	야 및 품목
중점지원	디지털 전	환 5대 분	5대 분야, 52개 품목		新디지털 전환		환	8대 분야, 61개 품목	
분야	환경에너지 미래혁신 선		야, 38개 품목 야, 82개 품목	탄소중립		8대 분야, 50개 품목			
(품목)	성장동력 고		은야, 85개 품목	미래혁신 선도		8대 분야, 52개 품목			
		사회안전망 구축 5대 분야, 45개 품목				동력 고도화 11대 분야, 61개 품목			
	■ 코로나19 <sup>5</sup> 일괄 적용	특별지침에 따라	기관부담금 비율	■ 기업 및 지원규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			기관부담금 비율   		
기관부담금	내역		기관부담금비율	내역사업		7	기관부담금비율		
율		강소기업100 , 소부장전략 20%		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				35% 25%	
	시장대응형,		2070	시장대응형			25%		
	■ <b>(졸업제)</b> 3개 사업, 총 4회 수행가능			■ <b>(졸업제)</b>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(중기부에서					
		상 사업	지원 횟수	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) * 단, '20년 이후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회					
	창업성장, 기술혁신, 총 4회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			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					
				<ul><li>★ 적용 제외 시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가준은 [붙암] 참좌</li><li>■ (청년의무채용) 정부지원 5억원 당 청년 1명</li></ul>					
기타사항	■ <b>(청년의무채용)</b> 해당 없음			의무채용 * 위반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					
	■ ( <b>중복지원 방지)</b> 과제 이력 제출			내용 [붙임2] 참조 ■ <b>(중복지원 방지)</b> 과제 신청 시 완료과제					
	- (8국시원 6시) 최세 이국 세월			및 신청 중인 과제까지 선행 연구내역 제출, 3책5공 준수확약서 제출					
			단계별 상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	•				<u>.</u> ) 제도폐	지
	수행할 수					<b>'</b>			-

### 3. `24년 지원내용

- □ (사업목적)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-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&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
- □ (지원규모) 1차 237억원 내외 (1차 105개 과제 내외)

#### < `24년 기술혁신개발사업 1차 지원규모 >

내역사업	구분	1차
수출지향형	예산	120억원
구칠시청청 	과제수	40개
시장대응형	예산	117억원
시장네공왕	과제수	65개

- \* 민간투자연계, 연계지원과제, 지정공모과제 등 일부 과제 별도 공고 예정
- ※ [참고]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·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, 신청·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
- □ (지원조건) 연구개발비의 65%, 75% 이내

내역 사업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*	지원방식
수출지향형	최대 4년, 20억 이내 (연차별 최대 5억 이내)	65% 이내	자유공모
시장대응형	최대 2년, 5억 이내 (연차별 최대 2.5억 이내)	75% 이내	(품목지정)

\*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의 35%, 25%이상 부담하여야 하며,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## 4. 신청자격 등

- □ (공통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- □ (세부과제별 자격)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

내역사업	지원대상 및 조건	참고문서
수출지향형	(수출)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고 직·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* '24.1.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(계약금액 포함)도 수출실적에 포함 - 단, 신청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이고,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'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*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, 국제 표준 인증, 수상실적(CES 혁신상 등)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'해외진출 세부계획'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	붙임 ① ②
시장대응형	(일반)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 전략품목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	붙임 ①, 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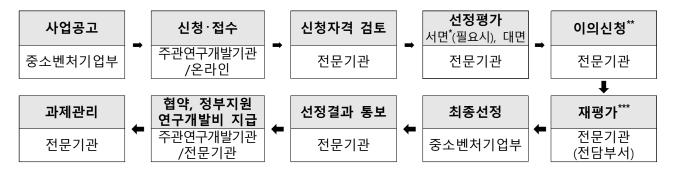
□ (신청자격의 검토·확인) 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,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\* 신청자격 검토(확인) 결과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 ○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·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,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☐ (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) 신청·지원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1] 참고 □ (3책5공 제도 적용)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○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,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\* (3책5공 제도)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,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) 5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□ 연구개발계획서 신청·접수기간 ☞ 접수창구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 ○ 신청·접수기간: 2024년 3월 4일(월) ~ 3월 18일(월), 18:00까지 ※ (1차공고): 수출지향형, 시장대응형

#### <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>

- ☞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
  - \*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
- ☞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·접수에 유의하기 바람
  - \* 18시 이후, 신청 및 제출,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
- ☞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:00 까지만 가능
- □ (신청방법 및 구비서류)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[붙임2] 참조

#### 6.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

- 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- ☞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



- \*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
- \*\* 선정평가(서면대면 등)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
- \*\*\*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

## 7. 기술료 징수기준

## □ R&D 기술료 징수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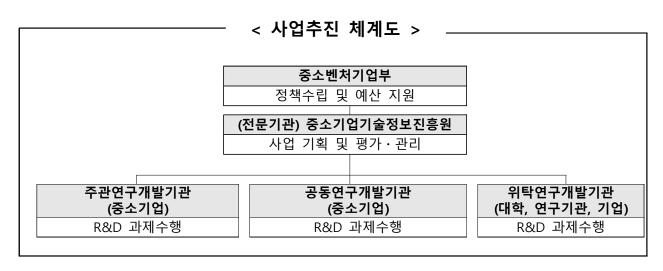
- (납부대상) 최종평가 "완료"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)
- (납부방식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 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- ☞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
-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-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 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  - \*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>> 고객지원 >> 이용매뉴얼 >> 시스템 이용매뉴얼 >> "기술료 매뉴얼" 참고

#### 8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#### 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-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o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-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
- ㅇ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
  - \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

## □ 추진체계



\* 대학,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

## 9. 문의처

## □ 사업안내

	담당기관(부서)	문의사항	전 화	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	시행계획 공고	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	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스케일업사업실)	신청·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		
시스템	IRIS 운영단	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·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	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	

#### ☞ 관련 웹사이트
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http://www.mss.go.kr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: http://smtech.go.kr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: http://www.iris.go.kr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\_llfqd

[붙임1]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[붙임2]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